#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65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8.

발 의 자:정점식·이인선·서일준

김도읍 • 고동진 • 신성범

배준영 · 강명구 · 김정재

임이자 • 권영진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지부,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 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 고 있음.

그런데 2021년 6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대규모이관되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정위원회 2개소만을 운영하고있고, 두 기관이 업무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처리와 업무효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에서 삭제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을 도모하는 한편, 「한국감정원법」이 「한국부동산원법」으로 개정 되었으므로(2020. 12. 10.) 이를 반영하여 명칭을 정정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전단 중 "지부,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「한국감정원법」에 따른 한국감정원(이하 "감정원"이라 한다)"을 "지부 및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(이하 "부동산원"이라 한다)"으로한다.

제16조제2항 중 "공사 사장, 감정원"을 "부동산원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된 주택임대 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②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된

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4조(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제14조(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회)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회) ① -----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·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법 률구조법 | 제8조에 따른 대한 법률구조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의 지부, 「한국토지주택 -----지부 및 「한국부동산 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 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지 <u>(이하 "부동산</u>원"이라 한다)---사 또는 사무소 및 「한국감정 원법」에 따른 한국감정원(이 하 "감정원"이라 한다)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 특별시 · 광역 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및 특별자 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 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 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16조(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 제16조(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

/ Eo	$\bigcirc$	(생	략)
$\sim$	(1)	( ^%	4)

-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 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따라 공 단 이사장, <u>공사 사장, 감정원</u> 원장 또는 조정위원회를 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.
- ③ ~ ⑨ (생 략)

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부동산원</u>
,
③ ~ ⑨ (현행과 같음)